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[별표 6의2] <신설 2021. 10. 19.>

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·관리 기준(제18조의2제1항 관련)

1. 비축기준

구 분	최소 비축수량
가.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·도지사등	방사선비상계획구역(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지역의 최대 범위로 한다)에 거주하는 인구 1명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 여유분 20퍼센트를 더한 수량 최소 비축수량 = 인구수 × 2회 복용량(1명당) × 1.2
나. 원자력안전위원회	가목에 따른 최소 비축수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

2. 관리기준

가. 분실방지 및 비상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

나. 갑상샘 방호 약품이 훼손·변형·변질되지 않도록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에 적합한 환경에 보관할 것

다. 유효기간이 도래한 갑상샘 방호 약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후 폐기할 것

라. 매 반기 1회 이상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현황을 점검할 것